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187 - 207

## 탈시설의 개념적 분석과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

이승기\*\*

본 연구에서는 탈시설의 개념적 분석과 탈시설을 위한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탈시설에 대한 개념적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주공간의 이전(移轉)이 이루어진 것을 탈시설화로 정의하고, 거주공간에서의 이전(移轉)을 기준으로 이전(以前) 단계와 이후(以後)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전(以前) 단계와 이후(以後) 단계에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 방안을 분석하여, 이전(以前) 단계에서는 탈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적 적용 방안을 1단계로 추진하고, 이후 거주시설 의 전체 장애인에 대한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以後) 단계에서는 개인예산제의 전면적 적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통제를 확보토록 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전반적인 제공을 지원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예산제의 적용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통제가 강화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장애인 개인예산제, 선택과 통제, 탈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이 논문은 2021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탈시설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탈시설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이념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바탕으로 자립적 삶을 실현할 방향성을 제시하며(서동명 외, 2022), 정상화(Normalization) 이론은 장애인의 삶이 비장애인의 삶과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다(이선우·이수경, 2021).

자립생활과 정상화가 이념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삶의 방향성을 규정한다면, 탈시설에 관한 논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실현토록 하는 실천적 차원에서의 담론이다.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삶은 인권 침해적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으며, 거주시설의 통제적이고 집단적인 환경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정수, 2019). 이에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탈시설을 둘러싼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구분된다. 첫째,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 환경으로 거주시설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즉 거주시설의 거주 기능을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형태의 시설 유형화 및 기능 전환을 통해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관점은 지역사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탈시설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한다(박민희, 2021). 둘째, 거주시설의 본질적 구조가 장애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설을 유지한 채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최은정, 2020).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물리적 거주 환경을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탈시설만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삶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삶이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자립을 위해 요구되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합적 지원체계의 하나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므로(이승기·이성규, 2014), 이를 탈시설 및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에 적용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탈시설의 개념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탈시설과 개인예산제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룬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 II.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혹은 탈시설화<sup>1)</sup>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중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고자 하는 사람과 시설에서 삶을 지속하고 싶은 사람의 비중이 연구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각각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강정배 외, 2020; 오욱찬 외, 2019). 이러한 결과를 단순하게 인정한다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시설의 기능을 개편하여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설에서 나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탈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시설에서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기능 개편을 통해 시설에서의 삶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음을 말해 준다.<sup>2)</sup>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계속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의 통합된 삶을 목표로 한다면 그간 지적되어온 시설의 집단거주 및 통제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시설 거주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나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설 거주를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1) 본 장은 이승기(2021)를 수정하여 보완한 것임.

2) 물론 탈시설을 원하지 않고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탈시설에 대한 충분한 기회제공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면 탈시설에 긍정적인 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시설에서 나가고 싶어 하는 장애인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은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탈시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강조점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탈시설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탈시설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탈시설 및 탈시설화의 개념적 스펙트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지며 자기결정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목표이다. 이러한 삶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그중 하나가 거주 공간에 대한 이슈이며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가의 지원과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1950년 이후 외원단체 혹은 종교기관 등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시설에서 기원하여 현재는 『장애인복지법』 상 시설유형 중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김진우 외, 2019).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거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 공간 제공기능과 관련하여 대규모 인원의 수용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2011년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에 대해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규모화 정책이 수립되었다(김진우 외, 2019). 2020년을 기준으로 시설 당 평균 27.9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48.8명이 거주하는 등(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21), 소규모화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규모 수용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가 이러한 대규모 수용으로 인한 집단적 생활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탈시설을 주장하는 강력한 논거로 제시되어 왔다. 탈시설이라는 개념은 종래 정신병원의 비인간적이고 집단적이며 강제적인 수용을 타파하기 위한 과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전반을 관통하는 용어가 되었다(유동철, 2009).

김진우 외(2019)는 탈시설은 폐쇄적이고 비인간적인 거주공간에서의 탈출을 의미하는 소극적 정책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인간적인 삶을 담보하지 못하는 개념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탈시설이라는 시설에서 벗어나는 거주공간의 단순한 이동에의 강조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미래 방향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수동적 개념



입에 주목하는 것이다.

거주공간 자체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탈시설에 비하여 장애인의 인간적인 삶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탈시설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탈시설화는 탈시설된 장애인, 즉 시설에서 벗어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주공간의 이전이라는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삶을 위한 다양한 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오욱찬 외(2019)는 탈시설화에 대한 개념을 외국의 사례에 견주어 3단계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1960년대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거주로, 1970년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확대, 1990년대 권리, 시민권, 선택 및 통제권의 확보로 개념적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표 1> 탈시설화 개념의 단계적 확장**

단계	시기	개념
1단계	1960년대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거주로 이전
2단계	1970년대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확대
3단계	1990년대	+ 권리, 시민권, 선택 및 통제권의 확보

출처: 오욱찬 외 (2019), p.23. 인용

이를 바탕으로 ‘탈시설’과 ‘탈시설화’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면, ‘탈시설’은 집단적 거주공간에서 사회의 거주공간으로의 이전을 강조하는 물리적 공간의 재배치를 핵심으로 하며, ‘탈시설화’는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관련 서비스의 확대 및 장애인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탈시설’과 ‘탈시설화’에 대한 용어에 대해 논쟁이 있다. 박숙경 외(2017)는 ‘탈시설’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 시설의 개선을 통한 탈시설의 노력도 ‘탈시설’이라고 보며 ‘탈시설화’라는 용어가 이때 선호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 경우 ‘탈시설’ 혹은 ‘탈시설화’는 거주시설이라는 집단적 공간을 남겨둔 채 진행되는 일련의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 개념적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 중의 하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운영되는 ‘체험홈’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탈시설화’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탈시설화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는 폭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탈시설화’로 진행되는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숙경 외(2017)는 기존 시설 정책을 개선하는 정도의 내용은 '탈시설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김진우 외(2019)는 '탈시설' 혹은 '탈시설화'의 개념적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의 성격'이며 거주공간의 집단성과 통제성을 벗어나 있다면 '탈시설화'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의 논쟁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내용 중의 하나는 오욱찬 외(2019)가 밝히고 있는 '탈시설화'의 개념적 확장에 관한 것이다. '탈시설화'의 개념은 '탈시설'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탈시설화'는 그 전제로써 시설에서 나오는 '탈시설'을 바탕으로 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욱찬 외(2019)는 장애인의 탈시설 상태를 주거 및 서비스 이용 방식에 따라 <표 2>와 같이 구분하여, 독립주거와 지원주거는 '탈시설 상태'로, 전환주거는 '탈시설 과정'으로, 소규모거주시설과 대규모거주시설은 '시설보호'로 구분하고 있다.

<표 2> 주거 및 서비스 이용 방식에 따른 개인의 탈시설 상태

구분	주거이용			서비스 이용			개인의 탈시설 상태
	지역사회 지리적 통합	동거인 선택권	소유·점유권 보유	지원인력 선택권	지원방식	주거결합	
독립주거	○	○	○	○	이용자 주도	×	탈시설 상태
지원주거	○	○	○	△	제공자·이용자 합의	△	
전환주거	○	×	×	△	제공자·이용자 합의	△	탈시설 과정
소규모거주시설	○	×	×	×	제공자 주도	○	시설보호
대규모거주시설	×	×	×	×	제공자 주도	○	

출처: 오욱찬 외 (2019), p.30. 인용

이러한 내용을 견지한다면 '집단성'과 '통제성' 등 시설의 특징을 수반하는 거주공간의 단순한 개선 형태는 '탈시설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탈시설화'의 전(前)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탈시설'을 거주시설에서 물리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탈시설화'는 이상의 '탈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탈시설화의 개념적 스펙트럼

구분	탈시설화 전(前) 단계		탈시설화 단계	
	법정시설	전환지원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된 삶
거주공간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자립홈 등	지역사회 주택	지역사회 주택
기능 및 내용	거주시설 기능개편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위한 지원	일반가정 형태에서의 삶	일반가정 형태에서의 삶과 정상화된 삶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적 측면에서의 노력과 기능전환 및 서비스 개선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개선이 ‘탈시설화’의 개념적 범주 속에 포괄될 수는 없으며, 탈시설화의 전(前) 단계로써 탈시설화를 향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개선과 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 2. 탈시설화 전략

‘탈시설’을 포함하는 탈시설화는 오욱찬 외(2019)에서 보듯이 개념과 실천적 확장을 지속해 왔다. 박숙경 외(2017)는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거주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고 둘째, 가정과 같은 보편적인 환경에서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 제약을 최소화하고 거주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넷째, 사생활과 소유권을 보장하고, 다섯째,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에 포함(inclusion)되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p. ii).

김진우 외(2019)도 “시설이 갖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친구,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하는 것”으로 탈시설화를 규정하여 유사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sup>3)</sup>

3)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경우 소극적 의미의 탈시설 정책보다는 ‘거주다양화지원정책’의 용어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탈시설화의 개념은 장애인이 집단적 거주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탈시설화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는 집단성, 강제성, 수동성, 선택 불가능성 등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시설 내지 이를 포함한 탈시설화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탈시설화가 상징하는 개인의 존엄적 삶을 억압하는 통제와 집단적 수용성을 해체하는 것을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또 현재까지의 정책이 이를 위해 꾸준히 추진되어 온 것도 그 당위성을 반증하고 있다. 결국, 탈시설화와 관련한 입장 차이는 탈시설화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기보다는 탈시설화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수준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전략적 추진 방법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탈시설화의 단계별 진행 방식은 탈시설 → 지역사회지원 시스템 확충 →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삶이다. 이러한 단계별 진행이 시간별로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탈시설화의 단계적인 진행이 역순으로, 즉,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삶 → 지역사회지원 시스템 → 탈시설 순으로 일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탈시설을 먼저 이루고 그 이후 지역사회지원 시스템이 확충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실현하는 순서로 진행해 나가되, 각각의 단계가 상호 연결되고 중첩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탈시설화의 의미와 강조점을 집단적 거주공간으로서의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지에 두는 입장이다. 조아라(2020)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집단수용시설로 규정하고 장애인의 선택이 배제된, 사회가 장애인을 시설로 추방한 결과의 산물인 장애인거주시설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한다. 김정하 외(2020)의 경우에도,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통제와 인권침해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설의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며, 거주시설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먼저 수립되고 탈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두 번째, 탈시설화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미옥(2021)은 탈시설을 추진하는 경우 장애인을 중심에 두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선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거주시설의 급진적인 폐쇄에 따른 탈시설은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 거주시설의 폐쇄 내지 탈시설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거주시설의 폐쇄 내지 탈시설은 결국 장애인의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장애인 가족에게 전가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가증시킬 수밖에 없고, 현실을 무시한 채 이념적으로 진행되는 탈시설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www.seasondaily.net/news/article.html?no=7044). 이러한 주장에는 탈시설 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미흡할 것이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는 탈시설 강행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탈시설화에 대한 이러한 전략적 추진 방법의 차이는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지원의 강화라는 과제와 맞물려 있다. 지역사회지원 강화 내용에 따라 탈시설화의 수준과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Ⅲ.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황 및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욕구

탈시설 혹은 탈시설화의 개념적 논쟁을 기반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제 장애인의 직접적인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조사는 '자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탈시설 혹은 탈시설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혹은 탈시설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 1.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 욕구

##### 1)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퇴소 욕구

강정배 외(2020)에 따르면 거주시설 장애인은 자신이 앞으로 살고 싶은 곳에 대하여, '현재 살고 있는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부모님 집' 16.6%, '혼자서 사는 집' 14.8%,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시설 장애인 중 48.2%가 시설에서 나와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며, 오옥찬 외(2019)에서 정리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도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약 50%가 탈시설 욕구 혹은 자립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설에서 나가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33.5%로 나타나, 향후 살고 싶은 곳이 어느 곳인지를 물어본 문항에서 시설 이외의 곳을 응답한 비율인 48.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강정배 외, 2020).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가고 싶은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자립 희망 시기 및 어려운 점

현재 살고 있는 시설에서 나가서 살고 싶다는 장애인 중 자립 희망 시기는 '1년 이후' 28.3%, '즉시' 15.8%, '수개월 이내' 11.9%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2.4%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퇴소하고 싶은 비율이 27.7%에 달해 상당수의 장애인이 조속한 퇴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강정배 외, 2020).

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한다면 꼭 필요한 한 가지의 도움으로는 '돈'이 3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활동 보조인, 가사 도우미)' 26.1%, '내가 살 집' 18.9%, '일자리' 10.3% 등의 순이었다(강정배 외, 2020). 이러한 결과는 시설 퇴소 후의 삶을 위해 필요한 소득, 주거, 돌봄, 고용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장애인의 탈시설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 2.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실태

서해정 외(2023)에 의하면 2020년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은 1,541명이며, 퇴소 이유는 '연고자 인도'로 인한 퇴소 634명(41.1%), '전원' 370명(24.0%), '기타' 252명(16.4%), '사망' 243명(15.8%), '취업' 48명(3.1%) 등의 순이었다.

동 연구는 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서비스에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바우처 제도, 자립정착금 이용 등이 주요 지원 제도이며,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가 퇴소할 때 도움을 가장 많이 주로 주는 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언을 통해 자립지원 서비스를 위한 보다 풍부한 지원체계의 구축과 활동지원제도 등 기존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며 일자리의 확충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서해정 외, 2023).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자립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원시스템의 강화가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지역사회지원시스템의 구축

탈시설화의 개념 속에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이념적 지향과 포괄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써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사회의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지원 시스템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 방향이 달라지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지원 시스템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지 혹은 개선을 논하는 것은 그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실현한다는 것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지역사회지원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최근에 있었던, 국가 혹은 사회의 답변은 황승현(2018)에서 설명하듯이,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복지,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의미한다(김승연 외, 2018).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실행 목표는 지역사회 거주, 독립적 생활, 욕구에 기반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탈시설화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하며 지역사회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지를 가늠하게 한다.<sup>4)</sup>

오욱찬 외(2019)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경로에 관한 연구에서 탈시설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분석한 후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패키지의 구성과 흐름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패키지는 주거, 소득 및 고용, 일상생활, 건강 및 의료, 사회적 관계, 심리·정서, 문화·여가, 권익 옹호 등을 내용으로, 탈시설 준비기, 지역사회 적응기, 지역사회 정착 초기, 지역사회 정착기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경숙 외(2017)는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탈시설의 정책과제로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 수립과 주택, 소득, 의료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 인식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결국 탈시설화로 진행되기 위해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상당한 노력과 투자 그리고 의지가 수반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실현 가능성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다(보건복지부, 2021). 동 로드맵은 정책의 추진 원칙을 지원대상, 탈시설 지원과 시설변환으로 하고, 시기별 전략을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시범사업 및 법령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 2025년까지 지역사회 거주 전환 지원, 2041년까지 거주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4) 커뮤니티 케어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현재는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경되고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상의 전체적인 연구 동향이나 보건복지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탈시설화 전략은 실행 방안이 정교해야 하고 포괄적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함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지원 시스템의 구축 없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탈시설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지원 시스템의 구축방안에 대해 장애인의 탈시설화 과정에 따라 검토한다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 개편이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이 둘을 연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도입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거주시설에 적용될 경우 거주시설의 기능 개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입 논의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의 개별유연화 전략을 통해 장애인의 개별적 삶을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거주시설 장애인 중 탈시설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지원 전략과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는 지원 전략을 통해 탈시설화를 보다 진전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IV.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거주시설 적용방안

### 1.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의미

장애인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예산제는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sup>5)</sup>가 먼저 시행되고

5) 장애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는 영국의 1996년 커뮤니티 케어 법(Community Care Act)의 수정에 의해 제도화되었고, 유예기간을 거쳐 1997년 4월 1일 시행되었다(Glasby, & Littlechild, 2009). 직접지불제는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choice)과 통제(control)를



이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직접지불제와 일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발전과정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직접지불제가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의 운동과 노력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한다면 개인예산제는 2003년에 도입된 제도로 장애인당사자에 의해 추진되었다기보다는 학습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연합적 노력에 출발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것은 개인예산제가 자립생활확보를 위한 장애운동이 아닌 학습장애인의 통합운동(inclusion movement)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2003년에 모임을 결성되면서 추진되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으며(Glasby, & Littlechild, 2009)<sup>6)</sup>, 아울러 직접지불제의 도입에 대해 영국 정부가 오랫동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에 비해 개인예산제는 오히려 영국 정부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7)</sup>

또한, 직접지불제가 간접지불 방식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었던 성인 케어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 비용을 장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한 것이라면, 개인예산제는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서비스 영역에 대해 현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직접지불제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에게 해당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그에 대응되는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 교육서비스, 사회생활서비스, 주거서비스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인정된 모든 서비스에 대응하여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직접지불제에 비하여 개인예산제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먼저, 욕구를 파악하고 파악된 욕구 중 지원이 가능한 욕구를 선별하며 선별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특정하고, 특정된 서비스를 현금으로 환산하고 할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금 할당을 통해 구매력을 확보한 장애인이 실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장애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구매 지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이승기·이성규, 2014).

개인예산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서비스 인정을 위

---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장애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초기에 직접지불제에 부정적이었던 영국 정부를 설득함으로써 제도화에 성공하였다.

6) 이 모임이 개인예산제의 정착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영국의 비영리단체 In Control의 기원이기도 하다.

7) 영국의 개인예산제는 2014년 돌봄법(Care Act)에서 법제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 사정도구 개발, 현금지급에 따른 오남용 우려, 현금사용 후 정산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에서 개인예산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제도의 본격적 도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sup>8)</sup>

## 2.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도입 모형 및 거주시설 적용 가능성 검토

### 1) 보건복지부 모형

#### (1) 개관<sup>9)</sup>

보건복지부는 2024년 개인예산제의 시범사업을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있다.<sup>10)</sup> 적용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승인받아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sup>11)</sup> 이용계획의 목표 관련성과 장애 관련성이 인정되면 자유롭게 서비스 인정이 가능하다. 개인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수급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의 20% 범위에 해당하면 된다.

#### (2) 장점과 한계

보건복지부 모형의 장점은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폭 넓게 인정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매우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금지된 서비스 외에 개인의 욕구를 폭 넓게 인정한 결과 장애인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이 활동지원수급량의 20% 범위 내에서 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통제하는 장치가 매우 취약하여, 신청이 제한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를

8)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바우처를 활용하여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4년 현재 진행중이며, 서울시도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4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9)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발간한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매뉴얼」을 참고함.

10) 8개 시·군·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기도 시흥시, 충청남도 예산군, 대전광역시 동구 및 서구, 전라남도 해남군이다.

11)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는 법에 어긋나는 서비스·물품·활동, 생활비,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일, 술·담배·복권을 사는 것, 의료비(필요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허용), 법률 또는 자체 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이 제한된 비용,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기타 참여자의 장애와 관련 없는 지출이다.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서비스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정 도구가 사실상 없다는 현실과 맞물려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을 단순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서비스 인정에 대한 사정 도구에 대한 개발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서비스 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 (3) 거주시설에의 적용가능성

현재의 보건복지부 모형은 활동지원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거주시설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활성화로 거주시설 장애인이 퇴소 후에 개인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2) 서울시 모형

### (1) 개관<sup>12)</sup>

서울시는 20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을 거쳐 2024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수급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모형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시범사업에서는 월 40만원씩 6개월간 총 240만원 한도에서 추가급여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모형과는 달리 서울시 모형은 개인예산계획에 대해 매우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친다. 승인여부에 대한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장애와의 연관성, 특수한 욕구, 삶의 변화가능성, 다른 기존 서비스로 대체가능성이 설정되어 있다. 장애인의 단순한 여행, 물품구매 등이 제외되어 보건복지부 모형에 비해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다.

### (2) 장점과 한계

서울시 모형의 장점은 보건복지부 모형과 비교하여, 먼저 활동지원수급여부가 자격 기준이 아니므로 대상에 있어서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활동지원수급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모형에 비해 개인예산제의 원형에 보다 충실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만큼 향후 제도의 확장가능성도 높다.

둘째, 보건복지부 모형에 비해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 도구를 사용하고 있

12) 동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의 2004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교육 자료를 참고함.

으며 이를 정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욕구기반 사정도구가 보다 정교해 진다면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지며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시 모형의 한계로는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향후 개인예산제의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 (3) 거주시설에의 적용 가능성

서울시 모형은 활동지원수급여부가 개인예산제도의 적용 조건이 아니므로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개인예산제에 의해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로 인정하여 이를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 3.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

개인예산제의 보건복지부 모형과 서울시 모형은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어서 거주시설 장애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시설 장애인의 적용 배제가 필연적인 사항은 아니며, 개인예산제가 탈시설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거주시설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탈시설화를 탈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을 탈시설화 전(前) 단계와 탈시설화 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표 3>에서 논의했듯이, 탈시설화 전(前) 단계는 장애인이 법정시설과 전환지원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탈시설화 단계는 거주 공간을 지역사회로 이전(移轉)한 경우를 말한다.

### 1) 탈시설화 전(前) 단계

탈시설화 전(前) 단계는 법정시설 혹은 전환지원 시설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이며, 개인예산제의 적용방안에 대해 두 가지 형태가 검토될 수 있다.

첫째, 거주시설의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예산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해당 거주시설에서 이미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개인예산제를 통해 다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주시설이 제공하는 포괄적 서비스의 범위를 개인예산제 적용에 맞추어 축소해야 함을 말한다. 자연스럽게 거주시설의 기능 개편과도 맞물리며 거주시설의 정체성과 역할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둘째, 거주시설 장애인 중 탈시설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만 개인예산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먼저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욕구 파악을 통해 탈시설 의지를 확인하고 탈시설을 위해 개인예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시설의 정체성과 역할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는 줄어들게 된다.

위 두 가지 방식 중 1단계로 탈시설 의지가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우선 개인예산제를 적용하고, 2단계로 개인예산제의 확장 가능성이 확인되면 이를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활동지원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모형은 탈시설화 전(前) 단계에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적용하기는 어렵고, 서울시 모형은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정책 판단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모형이 유연성과 확장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2) 탈시설화 단계

탈시설화된 단계의 장애인은 거주공간을 지역사회로 이전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개인예산제가 지역사회 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인예산제에 해당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모형과 같이 활동지원수급자로 대상자를 제한한다면 그만큼 적용 대상이 축소될 것이고 개인예산제가 기여하는 부분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 모형은 장애인의 욕구파악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인정되므로 탈시설화를 통한 자립생활 실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V. 결어

장애인복지의 발전 방향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확보,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삶을 위한 권리와 참여의 강화에 관한 것이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것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이 시설보호를 받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게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되어 왔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그동안 척박했던 장애인복지의 환경 속에서 사회가 외면했던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주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그에 대한 역할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도 점점 확충되어 가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역할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거주시설의 시설 내 보호 중심이라는 종래의 기능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역사회에서 보장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염두에 둔 서비스 제공은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인력으로 이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제도, 가족 및 타 기관과의 협력 등의 부족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한편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 보호에 중점을 둔 종래의 기능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함임을 인정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흐름이 장애인 중심으로 그리로 장애인 개인별로 제공되도록 변화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거주시설의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거주시설의 준비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배, 서해정, 김계정, 김도현, 김동현, 김희정, 임정민, 임혜리 (2020).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김미옥 (2021). 탈시설의 전제 요건. **월간 복지동향**. 268. 23-26.
- 김승연, 장익현, 김진우, 권혜영 (2018).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개  
념 정립 및 추진방향. 보건복지부·서울연구원
- 김정수 (2019). 장애인 거주시설과 인권 침해: 정책적 대안과 개선방향. **사회복지정책연구**.  
15(2): 75-95.
- 김정하, 김경희, 홍정훈 (2020). 장애인의 온전한 탈시설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다. 월간  
복지동향. 255. 44-53.
- 김진우, 윤덕찬, 장기성 (2019). 거주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전환 추진방안 연구.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 박민희 (2021). 장애인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준비의 상관관계. **사회서비스연구** 10(1),  
113-135
- 박숙경, 김명연, 김용진, 구나영, 문혁, 박지선, 정진, 정창수, 조아라 (2017).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국가  
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부 (2021).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1 탈시설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요약본).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 2024년 장  
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매뉴얼.
- 서동명, 윤상용, 이승기, 염태산 (2022). 장애인복지론(3판). 신정.
- 서해정, 송승연, 이미명, 김문규 (2023).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실태조사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오욱찬, 김성희, 박광옥, 오다은 (2019).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동철 (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집문당.
- 이선우, 이수경 (2021). 장애인복지론(제2판). 공동체.
- 이승기 (2021).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장애인복지지

설협회.

이승기, 이성규 (2014).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학**. 26: 235-249.

조아라 (2020). 집단수용시설의 탈시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월간 복지동향**. 259. 16-23.

최은정 (2020). 장애인 거주시설과 자립생활의 한계. **장애인복지학**. 28: 89-110.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21). 전국 장애인거주시설현황.

한국장애인재단. (2024).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교육.

황승현 (2018) '커뮤니티네어(지역기반 케어) 추진 로드맵.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25-38.

Glasby, J and Littlechild, R (2009). Direct Payments and Personal Budgets. Policy Press.

[www.seasondaily.net/news/article.html?no=7044](http://www.seasondaily.net/news/article.html?no=7044)

논문 투고 : 2024.10.14.

논문 심사 : 2024.11.29.

게재 확정 : 2024.12.17.

Abatract

# A Study on the Conceptual analysis of Denstitutionalization and the Application of Person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eungKi Lee\*

This study discussed the conceptual analysis of deinstitutionization and how to apply the person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deinstitutioniz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ceptual debates on deinstitutionization, the relocation of living spaces was defined as deinstitutionization, and it was divided into pre-stages and post-stages based on the relocation in living spaces. By analyzing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revious and subsequent stages, it was suggested that a limited application plan for the purpose of deinstitutionization was needed in the previous stage, and in the subsequent stage, it was suggested that support for the community's independent living after deinstitutionization is needed through the full application of the personal budgets for the people. It was suggest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support the independent living in the community because it means securing the choice and control over services and receiving support for the overall provision of necessary services.

**Keywords:** Person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hoice and Control,  
Deinstitutionization, Residential Facility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